

대한럭비협회 미래국가대표 전문지도자 공개 채용

대한럭비협회는 대한민국 럭비 종목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열정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 대한럭비협회(KOREA RUGBY UNION)는

-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기관으로 럭비 종목 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 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 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럭비 종목을 소관 하는 월드럭비(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럭비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1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업무
기간제 계약직	후보선수 전문지도자	1명	○ 미래국가대표 선수 국내외 훈련 지원 ○ 미래국가대표 선수 합숙훈련 및 국외훈련(대회) 지도 지원 ○ 미래국가대표 선수의 인권보호와 안전, 건강 및 체력 관리 지원 ○ 기타 전임감독 및 전담지도자가 선수 훈련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청소년대표팀 전문지도자		
	꿈나무선수 전문지도자		

2 근무형태 및 조건

채용분야	근무신분	근무시간	근무지	근로계약기간	월급(세전)*
미래국가대표 전문지도자	기간제 계약직	탄력적 운영	미래국가대표 강화훈련지(국내/외), 국제대회 개최지	합숙훈련 및 국외훈련(미정)	일일 120,000원 * 국외파견 시, 일비(\$30) 지급

* 대한체육회 미래국가대표 트레이너 수당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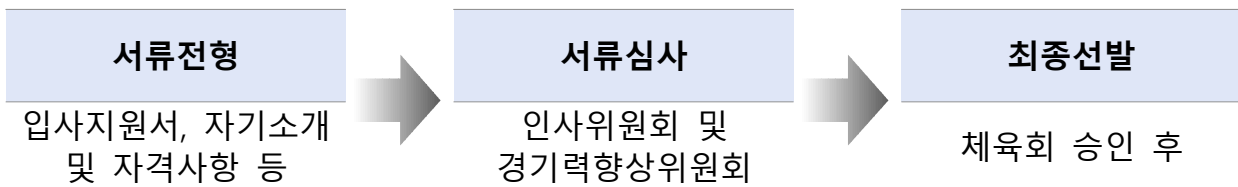
** 4대보험 미지급

*** 합숙훈련 일정(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필수 자격요건	1)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된 사람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회원종목 단체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함) 2) 미래국가대표 전문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1.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지만 체육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 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안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 종목의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해당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3) 훈련 참가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사항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서류마감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3점) ○ 외국어 능통자(공인영어점수 기준/ 증빙서류 제출 필수) (2점)							
	<table border="1"> <thead> <tr> <th>TOEIC</th> <th>TOEFL</th> <th>TEPS</th> <th>G-TELP</th> </tr> </thead> <tbody> <tr> <td>700점 이상</td> <td>iBT 95점 이상</td> <td>330점 이상</td> <td>Level2 60점 이상</td> </tr> </tbody> </table>	TOEIC	TOEFL	TEPS	G-TELP	700점 이상	iBT 95점 이상	330점 이상	Level2 60점 이상
TOEIC	TOEFL	TEPS	G-TELP						
700점 이상	iBT 95점 이상	330점 이상	Level2 60점 이상						

4 전형절차



가. 채용일정 * 선발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추진일정
서류전형 (원서접수)	2026. 4. 22.(수) ~ 2026. 5. 14.(목), 15:00 [합격자발표: 2026. 5. 18.(월)] * 서류제출 시 자격/경력 증빙서류 일체 필수 제출 ** 메일 및 지원서 제목 [미래국가대표 전문지도자 지원(성명) 필수]
면접전형	2026. 5. 28.(목) 예정 [합격자발표: 2026. 6. 1.(월)]
정식임용	대한체육회 승인일 ~ 2026. 12. 31.

나. 전형별 주요내용(채용방법: 채용공고를 통한 공개경쟁 채용)

구분	주요내용	합격배수
----	------	------

① 공통(유의사항)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으로만 작성하며,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 및 경력사항은 입사지원서와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확인하며, 두 서류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두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인정함.
- 서류 누락 또는 미 제출 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② 전형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인원) 지원자 전원 * 자격요건에 맞는 지원자 전원 합격처리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평가점수 70점 이하일 경우 탈락 • (평가기준) 자격요건,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 등 평가 							
서류전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자격요건 확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자격 충족 여부 확인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시 탈락 * 문항별 공백 포함 1,000자의 50%미만 작성 시, 탈락 * 동일 음절, 문장 등 5회 이상 반복된 경우, 탈락 * 평가위원 과반 수 이상의 블라인드 작성 원칙 위반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탈락 </td> </tr> <tr> <td>가점요소 평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시 제출) </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내용	자격요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자격 충족 여부 확인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시 탈락 * 문항별 공백 포함 1,000자의 50%미만 작성 시, 탈락 * 동일 음절, 문장 등 5회 이상 반복된 경우, 탈락 * 평가위원 과반 수 이상의 블라인드 작성 원칙 위반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탈락 	가점요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시 제출) 	2배수
구분	주요내용							
자격요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자격 충족 여부 확인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시 탈락 * 문항별 공백 포함 1,000자의 50%미만 작성 시, 탈락 * 동일 음절, 문장 등 5회 이상 반복된 경우, 탈락 * 평가위원 과반 수 이상의 블라인드 작성 원칙 위반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탈락 							
가점요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시 제출) 							

구분	주요내용	합격배수
면접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2026. 5. 28.(목) / 대한력비협회(올림픽회관) 예정 *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 (평가기준) 직업윤리관, 체육상식, 적극성, 성실성, 경력 및 경험 • (평가방법) 면접위원별 5개 항목 평가 (항목당 20점 만점 총점 100점 만점) 	1배수
최종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기준) 합격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 평가항목 고득점자순(성실성 → 적극성 → 직업윤리관 → 체육상식 → 경력 및 경험)으로 결정함. • (최종확정) 지원 자격 검증 후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확정 	-
예비합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순위 1~2위를 예비 합격자로 하고, 최종합격자 중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순위대로 임용 -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2배수

다. 전형단계별 가점대상(최대 10점 반영)

유형	가점대상	전형단계		우대 사항	적용기준	관련근거
		서류	면접			
정부권장정책	청년 (만15~34세)	✓		3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해당하는 청년(서류마감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자격증	외국어 능통자	✓		2점	• 외국어 능통자(공인영어점수 기준 / 증빙서류 제출 필수)	
					TOEIC 700점 이상	TOEFL iBT 95점 이상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방법	용도
------	------	------	----

① 공통(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수신시간 이후 추가 접수 절대불가(송신시간 기준이 아니므로, 제출에 문제 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 요망)
-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은 증빙서류 모두 제출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제출서류 및 방법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방법	용도
원서접수 [4.22.(수) ~ 5.14.(목)]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지원서(대한럭비협회 양식) <li style="background-color: #ffffcc;">※ 메일 및 입사지원서 제목 <li style="background-color: #ffffcc;">- 꿈나무 일반트레이너 지원(성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경력 증빙서류 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이메일로 5. 14.(목) 15:00 까지 제출 - hr@rugby.or.kr 	입사지원 및 확인용
면접당일 [5.28.(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발행 신분증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본제시 ○ 사본제출 	입사지원 확인용
합격자 발표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사진(명함판) ○ 채용신체검사서 * 단, 신체검사 결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본제출 	

< 경력 관련 유의사항 >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본인의 지원 분야에 대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사 직인(또는 인감)이 포함된 업무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확인서만 제출 시 불인정)
- 수기로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는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외 서류(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는 불인정
- 지원서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6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채용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대한럭비협회 직원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기 바라며, 최종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의 계산, 자격증, 교육 사항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 본 채용은 공고된 모든 모집분야 중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동일인이 복수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일정은 대한럭비협회 홈페이지(<http://rugby.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7 임용 결격사유

□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전담팀,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 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 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1천만원 초과인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1천만원 이하인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

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 7. 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 행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1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대한력비협회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협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 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문의 및 연락처: 김아람 과장(☎02-6325-4248)

2026. 4. 22.(화)



(사)대한럭비협회

KOREA RUGBY UNION